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209844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2098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875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수진

변론종결2022. 3. 17.

판결 선고2022. 4. 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875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05. 1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05. 1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E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을 "위 소의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각출하여"를 "각출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2020. 2. 4."를 "2020. 2.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5) 원고는, 파주시 F 답 5,577㎡, G 전 1,197㎡, H 전 1,993㎡, I 전 3,236㎡가 2001. 10. 27. 및 2003. 12. 3.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토지이고, 아래 표 중 음영 표시된 나머지 토지는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중 아래 표 '1차 분할' 항목의 음영 표시된 5필지를 2002. 7. 22. 대한민국이 협의취득하면서 피고 C에게 토지보상금 66,994,8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02. 8. 16. 원고와 E에게 그중 20,000,000원씩을 지급한 일이 있어, 이는 이 사건 이전 약정이 존재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J	F	답	5,577	F	답	5,259	F	답	4,726
K	답	106							
L	답	150							
M	답	168							
G	전	1,197	G	전	275	O	전	926	
H	전	1,993	H	전	1,771	P	전	106	
J	I	전	3,236	I	전	752	I	전	740
Q	전	744							
R	전	896							

그런데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분할, 협의취득, 토지보상금 분배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약정 성립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5. 11. 2.에 이르기도 전의 일인 점, 위 표 '2차 분할' 항목의 음영 표시된 2필지에 관한 토지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 약정이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여서"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청구는"을 "소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창국

판사한승철

판사하승수

별지